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명문화〉

■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4893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명문화	2
2. 부칙	7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준병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2. 4.
3. 회 부 일 : 2025. 12.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폐기물 처리는 지역별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 참여 명문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2. (생략) <u><신설></u> ④ ~ ⑦ (생략)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2. (현행과 같음) 3.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 ⑦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¹⁾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위원회는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과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현행법 제5조의2²⁾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함.

현행법 제5조의2제3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³⁾으로 정하는 사람과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

1) 위원회 개요는 [참고자료1] 참조

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 해양폐기물 관련 법령,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수립, 시행,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대응 업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해양폐기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해양폐기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이하 “해양환경공단”이라 한다) 이사장
3. 「어촌·어항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됨.

이에 따라 2026년 1월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당연직 위원과 9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됨.⁴⁾

□ 현행법상 위원회는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존재함.

해양폐기물은 해류를 통해 이동하는 특성으로 인해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며, 해양폐기물 문제는 지역별 생태계와 해안 환경,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관리의 핵심 주체로 인식될 필요가 있음.⁵⁾

또한, 법 제5조제1항⁶⁾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5조의2제2항제2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정책 조정과 협력, 갈등 해결 및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의 실효성 및 성과 확대의 측면에서 위

4) 위원회 위원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5)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거한 해양쓰레기 총 64만 9,749톤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처리한 쓰레기는 57만 446톤으로, 전체의 87.8%에 달함.(자료: 해양수산부 제공)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필요성이 제기됨.

- 개정안은 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⁷⁾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란 각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구성원이 됨.

따라서 개정안을 통하여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자가 위원이 되어 위원회의 심의·조정 과정에 참여한다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한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즉, 현행법 제5조의2제5항⁸⁾은 동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5조의2제3항제3호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도 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3.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폐기물 문제에 있어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협의체가 추천하는 위원을 위촉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는 입장임.

2. 부칙

가. 부칙의 요지

-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부칙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의 요건에 따른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 시행일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법적·제도적 충격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

도록 한 것은 입법 취지와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임.

□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위원회 구성 방법 등 인적 요건에 관한 변경이 발생하므로, 위원회 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은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되었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동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를 제출하였음.⁹⁾

문 의 처
02)6788-5427

9)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안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순감소 또는 재정수입이 순증가하는 경우와 같이 재정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 법안도 포함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1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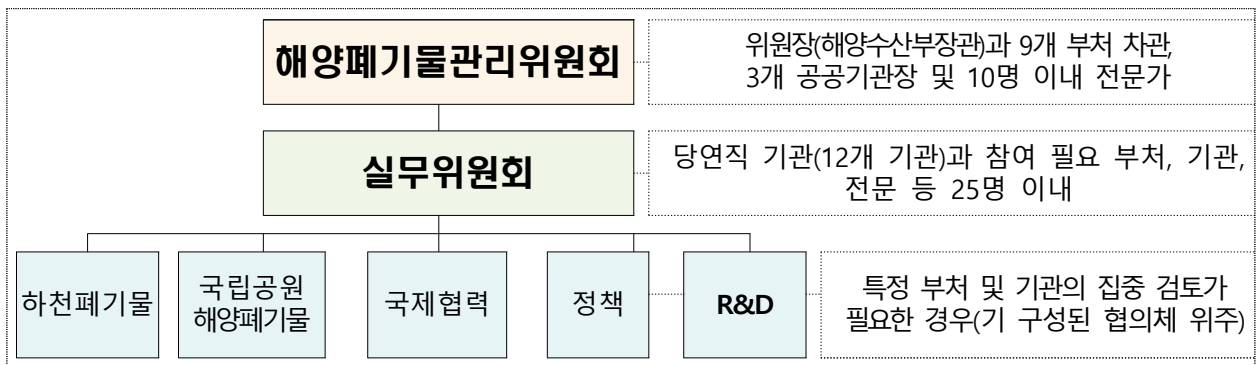
□ 위원회 개요

- (근 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
- (목 적)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다양한 안전과 대책을 관련 부처, 공공기관 및 전문가 참여하여 심의·조정하고 상호 협력
- (안 건)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중앙과 지방의 갈등 조정, 법령 및 제도개선, 기본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대응 등
- (기 타) 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하 실무위원회* 및 분과 운영

* 위원장(해양환경정책관)과 9개부처(4급이상), 3개 공공기관, 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 위원회 구성

- 당연직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위원장) 외 해양폐기물 문제와 관련도가 높은 9개 부처 차관급공무원 및 3개 공공기관의 장을 지정
- 당연직 위원 외 민간위원은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는 업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임명하는 10명 이내로 구성



□ 운영실적 ('21년 ~ '25년)

- 현재까지 대면회의(서면 제외) 총 22회 개최(본회의 5회, 분과회의 17회)

* (본회의) '21(1회), '22(2회), '23(3회), '24(4회), '25(5회) / (분과) '22(2번), '23(5번), '24(5번), '25(5번)

참고 2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현황(공공 13, 민간 9)

구분	기관명	직위	비고
1	해양수산부	장관	위원장
2	해양수산부	차관	당연직
3	기획예산처	차관	
4	행정안전부	차관	
5	외교부	제2차관	
6	산업통상부	제1차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8	국토교통부	제1차관	
9	해양경찰청	청장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1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12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민간위원
13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14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	과학기술연합대학원	초빙교수	
16	(사)동아시아바다공동체오션	대표	
17	서경대학교	교수	
18	기후해양정책연구소	대표이사	
19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21	공주대학교	교수	
22	충남대학교	교수	